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19. 6. 28.(금) 08:30부터 가능 (인터넷·온라인 : 6. 28.(금) 08:30부터 가능)		
배포일시	2019. 6. 27.(목)	대변인실	044-203-6581
담당부서	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	담당과장	배동인(044-203-7261)
		담당자	사무관 전주현(044-203-7256)
	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	담당과장	김지연(044-203-7112)
		담당자	사무관 고정표(044-203-7111)
	교육부 사회전략회의추진TF팀	담당과장	안주란(044-203-7277)
		담당자	사무관 정한피(044-203-7268)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제9차 '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' 개최

「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」 과제 이행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
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 진행 상황 점검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. 28.(금)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'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'를 개최하고,
 - 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「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(안)」,
 -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(안)」을 논의한다.
- 제1호 안건으로 「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(안)」을 논의한다.
 - 정부는 작년 12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」(18.12.21.)을 마련하였다.

- 먼저, 국·공립 교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·세분화하고 사립 교원의 징계 수준도 이에 준하도록 「사립학교법」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.

※ 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 완료('19.3.18.시행),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완료('19.4.16.)

- 또한,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감(장)이 지정하는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·입학을 허가하도록 시·도 교육청별 전입학지침을 개정('19.2.)하여 피해자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.

- 교장·교감 등 관리자 자격 연수에 성희롱·성폭력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, 예비교원 단계에서부터 성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실적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지표로 반영('19.4월)하였다.

- 향후에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, 예방교육 이수 및 징계이력 등을 반영한 교원 자격취득 기준 강화,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등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- 제2호 안건으로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(안)」을 논의한다.

- 정부는 지난 2월 대국민 보고를 통해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('19.2.19.)」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전 영역별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.

- 이번 회의에서는 대국민 보고 이후 달성한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, 2022년까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원·법령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·논의한다.

-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 발표 이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.
- 먼저, 돌봄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‘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마을돌봄 등 지역 돌봄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,
 - 당초 온종일 돌봄 목표치를 상회하는 약 40만명의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.
 - ※ 온종일 돌봄 ('18.) 36만명 달성 → ('19.) 40만명 공급 예정(당초 목표 37.2만명)
- 배움과 소득 영역에서는 출발선 단계에서부터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('19.4~)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.
- 일 영역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용 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32% 증가하였으며, 근로시간 단축 활용 인원도 전년 동월 대비 43% 증가하는 등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.
 - ※ '19.5월말 기준 남성육아휴직 9,369명(전년 7,098명 대비 32%증가), 근로시간 단축 2,364명(전년 1,648명 대비 43% 증가)
- 환경·안전 영역의 경우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8개의 관련법을 정비하였고,
 - 한·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.
- 앞으로 관계 부처는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의 이행실적을 반기마다 지속 점검하고, 이를 사회 동향 및 지표 변화 분석과도

연계하여 사회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,

- '혁신적 포용국가' 누리집*에 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, 홍보 책자를 배포(19.7)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
* 누리집 주소: <http://www.moe.go.kr/spc>

【붙임 「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(안)」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전주현 사무관(☎ 044-203-7256),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고정표 사무관(☎ 044-203-7111), 사회전략회의추진팀 정한희 사무관(☎ 044-203-72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

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

2019. 6. 28.



관계부처 합동

차 례

I. 추진 배경 및 경과	1
II. 대책 추진 성과	3
III. 향후 중점 추진 과제	8
IV. 조치 사항 및 추진 일정	11

I. 추진 배경 및 경과

□ 추진 배경

- '18년 상반기부터 공공부문 및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서 지속된 미투 운동이 중·고등학교,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

☞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강화,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, 예방교육 및 인권·양성평등교육 강화, 학교 내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('18.12월)

□ 추진 경과

- (근절대책 마련) 학교 및 교육청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장 적합성 높은 근절대책 마련
 - 교육부 내 '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지원팀' 설치('18.3월~)
 - 학생·교사·전문가 등 현장 간담회,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('18.4월~), 시·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
 - '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' 발표('18.12.21.,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)
- (근절대책 이행) 범정부 협의체 및 시·도교육청 협의체를 통해 이행점검
 - 여가부·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협의체(여성가족부 주관)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('19.2월~)
 - 시·도교육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, 교육부-교육청 협의체 정례화를 통해 추진상황 이행 점검('19.2월~)

[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]

- 6대 핵심 영역, 19개 추진 과제로 구성 -

핵심 영역	주요 추진 과제
① 성희롱·성폭력 실태파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중·고등학교 대상 실태조사 ② 대학 대상 실태조사
② 피해자 보호 및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 기능 강화 ② 초·중등학교 성희롱·성폭력 사안처리 체계구축 및 컨설팅 강화 ③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④ 초·중등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보호 강화 ⑤ 청소년 지원기관을 통한 상담 및 치유 지원 ⑥ 대학 성희롱·성폭력 대응체계 강화
③ 가해교원 징계 및 재발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립 교원의 성비위 징계 및 이행 강화 ② 징계 결과의 피해자 통지 ③ 가해교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·상담 의무화 ④ 성비위 대학 교원에 대한 연구비 제한
④ 예방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예비·현직교원 등 대상 예방교육 의무화 ②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·보급 ③ 대학 예방교육 실적 등 기관평가 연계
⑤ 양성평등문화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초·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강화 ②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내 교육적인 해결 유도
⑥ 범정부 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범정부 협의체 등 활용 강화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

II. 대책 추진 성과

1 신고체계 및 사안 대응 기반 강화

- (신고센터 운영) 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 내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스쿨미투 사안 신고·처리 활성화('18.3월~)
 - (교육부) 교육부 신고센터 내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해소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 신고 기능 추가('19.5월~)
 - ※ 106건('18년2/4분기)→39건(3/4분기)→50건(4/4분기)→37건('19년1/4분기)→54건(익명 2건 포함)(2/4분기) ['18.3.9.~'19.6.21., 총 286건]
 - (시·도교육청) 교육감 직통 신고 핫라인 구축(서울, 광주), 성인권 시민조사관의 사안조사 참여 제도화(서울, 부산)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

< 성희롱·성폭력 신고체계 우수사례 [서울교육청] >

- 별도 인증 절차 없는 '교육감 직속 핫라인' 이메일 신고센터 개설
- 성평등팀 신설을 통한 예방교육-사안처리-모니터링-회복프로그램 실시까지 사안처리 전 과정의 일원화
- 성인권 시민조사관(20명)을 위촉하여 사안발생시 사안조사, 특별장학 및 사후모니터링에 직접 참여('19.4.9.~'5.31., 총 11회 활동)

- (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확대) 교육부 내 성희롱·성폭력 근절지원팀 설치('18.3월~),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확대·개편('19.5월)
 - (교육청) 5개 교육청(서울·경기·인천·광주·울산) 내 성희롱·성폭력 대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*을 설치하여, 사안발생부터 후속조치, 재발방지대책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체제 마련('19.3월~)
 - ※ (소관 업무) 교내 성폭력(스쿨미투) 사안 통합 대응(신고접수·상담, 피해자 보호, 학교안정화 지원), 학생·교원 폭력예방교육, 양성평등교육 등

- (대 학) ‘양성평등기본법’에 의해 전국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성희롱·성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전문성 및 예방교육, 상담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센터 선정·운영(‘19.3월~)

【 대학 성희롱·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운영 개요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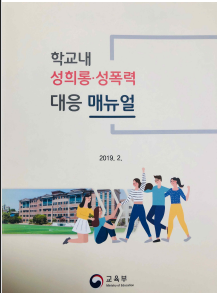
▶ 주관 기관 :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

※ 대학 내 성희롱·성폭력 고충·상담 기구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(회원교 112개, '19.5월 부터 교육부직할 비영리법인 등록)

▶ 주요 사업

- ① 대학내 성희롱·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
- ② 예방교육 자료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
- ③ 담당자 교육·연수 등 역량강화
- ④ 전문가 자문 컨설팅 및 우수사례 확산

- (대응 매뉴얼)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, 교육청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·피해 유형별 사안처리과정 및 구체적인 대응사례 등을 수록한 ‘학교내 성희롱·성폭력 대응 매뉴얼’ 개발 및 배포(‘19.2월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 내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 상담 문의 및 신고절차 - 대응 주체(학교장, 교사, 학부모)별 역할 및 유의사항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차 피해 방지, 피해자 응급 조치, 전문기관 연계 방식 등 구체적 지침 포함 - 유형별(학생-학생, 교사-교사, 학생-교사, 교사-학생) 사안 대응 절차 - 유형별 대응 사례(모범 사례 및 부적절 사례 포함)
---	---

- (사후컨설팅 지원) 전국 초등학교원 양성기관(13교) 및 희망하는 학교(9교)를 대상으로 사안처리 지원 및 재발방지 등 관련 전문가 과견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(‘19.5월~, 여성가족부·교육부)

2

교원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징계기준 강화

- (징계시효 연장) 교원의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(5년→10년)
※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('18.4.17.시행)
- (국·공립교원 징계기준 강화) 미성년자 성희롱 징계기준 강화, 불법촬영·공연음란 등 양정기준 신설 등 국·공립 교원 성비위 징계기준 정비('19.3월)

< 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 사항 ('19.3.18.시행) >

기 존		⇒	개 정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미성년자/장애인 대상 성희롱 	견책~파면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강 화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미성년자/장애인 대상 성희롱 ■ 공연음란 행위 ■ 미성년자/장애인 대상 공연음란행위 ■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■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가해 	정직~파면
<신 설>				

- (사립교원 징계 실효성 확보) 관할청의 징계·해임 등 요구시 임용권자의 이행을 의무화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「사립학교법」 개정·시행('19.3.19.)

※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한 '사립학교법 시행령' 공포('19.3.19.)

- 사립교원 징계시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완료('19.4.16., '19.10.17.시행 예정)

※ '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' 입법예고 완료('19.5.3.~6.12.)

신설 조문

제66조(징계의결)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,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**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.

3

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

- (피해학생 전학 지원)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교육감(장)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학생을 전입 받도록 시·도교육청별 전입학 지침 개정 완료('19.2월)

기존	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재학교) 전입학 대상학교로 전입학 요청 ② (전입교) 허가/불허 결정 ③ (학 생) 불허시 전학 어려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재학교) 대상학교 배정을 교육감에 요청 ② (교육청) 전입학 학교를 지정 ③ (전입교) 전입학 허가 또는 불허 결정 ※ 불허시 교육감에 사유서 제출 ④ (교육청) 전입학 위원회에서 불허 사유 심의 후 심의 결과에 따라 ①다른 학교 지정 또는 ②재차 지정 ⑤ (전입교) 재차 지정시 무조건 전입학 허가 ⑥ (피해학생) 배정된 학교로 전입

- (학생 상담·치유 지원) 중·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증원('19년 2,715명, 484명 증원)하고, 전문상담교사 대상 학교폭력·성폭력 분야 역량강화 연수 실시('19년 총 3회, 653명)
 - 청소년상담 1388 상담사(109명)를 대상으로 교내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* 교육 실시(~'19.6월, 여성가족부)
 - * 성희롱·성폭력 포함 성(性)문제 상담 총 9,879건 실시('19.1.1.~.4.30)
- (수사과정 중 2차피해 방지) 신변보호* 강화, 피해자보호 전담관 운영, 피해자 케어요원** 투입 등 보호 조치 강화(경찰청)
 - * 보호시설 연계, 임시숙소 제공, 스마트워치 대여, 순찰강화, 112시스템 등록, 신변경호 등
 - ** 피해자 상담·지원활동을 위해 심리학 전공자 및 경력자 채용·배치('06년 이후 총 31명 선발)
 - '피해자 조사 표준모델' 적용('19.2월) 및 여성폭력 관련 민간 전문가를 조사과정 조정관으로 채용·배치('19.4월, 13개 지방청 각 1명씩) 하여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심리 안정 도모
 - 피해자가 단독으로 비공개 장소에서 여경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을 수 있는 피해자 친화적 조사환경 구축 추진(~'19.상)
 - ※ '17년 3개서(1억 9,900만)→'18년 15개서(5억 9,900만) →'19년 25개서(9억 9,900만)

4

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기반 강화

- (예비교원 양성)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('19~'20년)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('19.4월)
 -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 시 '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', '양성평등교육' 등 개설·운영 권고('19.2월)
 - ※ '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' 등 11개 주제 교육과정 반영 권고
- (학교관리자 자격연수 강화) 교장교감 자격취득 연수 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의무화*('19.4월)
 - ※ 교(원)장·교(원)감·수석교사·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(교육부 고시) 개정('19.4.1.)
 - * 정교사는 '12.6.15.부터 의무화 완료
- (대학 예방교육)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시 성희롱·성폭력 전담기구 운영, 예방교육 실적 등 지표 반영('18.8월) 및 대학 정보공시에 4대 폭력 예방교육* 실적을 공시항목으로 반영('18.10월)
 - * 성폭력·성희롱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(각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)
- (양성평등교육 진단지표 개정·보급) 학교 내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'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' 개정·배포*('19.2월)
 - * 교원·교육청·전문가 등 의견을 수용하여 '15년에 기 개발한 지표를 통합·개편 및 현장 적합성 강화

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(2019년)		
<대 영역>	<중 영역>	배 점(100)
1. 양성평등한 학교문화와 인프라	①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에서의 양성평등	17
	② 양성평등 학교운영현황 및 개선 조치	13
	③ 양성평등한 학교시설(화장실·탈의실) 및 환경 구축	10
2.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운영	④ 학교 교육 목표에서의 양성평등	16
	⑤ 양성평등교육의 행재정적 지원	10
	⑥ 양성평등교육(교과 및 비교과) 활동 실적	14
	⑦ 학생의 양성평등교육 만족도	5
3.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	⑧ 교직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	10
	⑨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	5

Ⅲ. 향후 중점 추진 과제

- ❖ 근절대책 수립 이후 자문위원회, 시·도교육청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보완 필요 사항 도출
 - (신고·사안처리 강화) 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청소년 특성을 반영하여 즉각적인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한 모바일 신고·상담체계 도입 필요
 - (정보공개) 피해자 권익 구제를 실질화하고, 투명한 조치결과 공개를 통해 예방 및 자정 노력 유도 필요
 - (교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) 예비·현직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자격기준 강화 등 제도 보완 필요

1 신고 및 사안대응 체계 강화

□ 신고·상담체계 개선

-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친숙한 온라인·카카오톡 상담 기능 활성화('19.하~, 여성가족부)
 - 학교 외부 성희롱·성폭력 상담창구를 일원화(1388)하고, 상담 과정에서 사안처리 필요시 교육부·교육청 신고센터 안내
 - 교육청별 운영 중인 신고센터의 익명 신고기능* 도입 확대('19.하)

* 현재 4개 시·도교육청(울산, 세종, 경남, 제주)에서 익명신고 접수·처리

□ 사안처리 역량 강화

- (교육청) 성희롱·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시·도교육청과 협의하고, '20년 시·도교육청 평가지표에 전담조직 구성·운영 여부 반영
- (대 학) 성폭력 상담 전문가, 변호사 등으로 '성희롱·성폭력 사안처리 자문단'을 구성·운영하여('19.7월~), 대학 사안처리 및 조사,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사례 중심의 정보·자문 상시 제공

□ 적극적 개입 및 엄정한 처분

- 중대·심각한 교원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은 대학·학교 측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관할청(교육부·교육청)이 적극 개입하여 조사하고, 징계 요구 실시(상시)
※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성비위 교원 징계 및 재임용 여부 적정성 관련 교육부 사안조사 실시('19.6~7월)

2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정보 공개 강화

□ 주기적 실태조사 및 공개

- (중·고등학교) 학생·교원 대상 성희롱·성폭력 및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실시·공개하고*, 학교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제도개선에 활용(~'20.상, 격년)

* 연구진 선정('19.4월) → 전문가 의견수렴 및 문항 검토·개발(5~8월) → 조사실시(9월)

- (대 학) 모든 대학의 성희롱·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,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·공개하고, 대학 전담기구 역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활용(~'20.상, 격년)

□ 학교 성희롱·성폭력 및 양성평등 관련 정보공시 확대

- (초·중등) '19년부터 개정·보급한 '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' 진단 결과를 초·중등 정보공시항목(학교알리미)으로 반영 검토('20년~)
- (대 학) 현행 대학 정보공시항목에 포함된 폭력예방교육 실적 이외에도, 양성평등 및 성희롱·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 등을 대학 정보공시(대학알리미) 항목에 반영('20년~)

□ 교원의 성희롱·성폭력 징계 투명성 제고

- (징계절차 투명화) 성희롱·성폭력 교원의 징계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*하고,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**하는 내용으로 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(~'20년)

* 의견진술권 보장, 징계결과 통보서 신설 등 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 개정안 입법예고('19.5월)

** (참 고) 성비위 징계시 징계의결서를 학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사립학교법」 개정안(신경민 의원 대표발의) 교육위 계류 중('19.3.25.~)

- (사례 공유) 초·중등학교 및 대학의 성희롱·성폭력 사안 내용, 처리 과정 및 징계 결과를 수집하여 사례집을 발간·배포(~'20년)

※ 학교명, 성명 등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

3 예비·현직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

□ 예비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

- (교원자격 기준 강화)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기준으로 규정하고('19.하),
 - 재학 중 성희롱·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자격취득 시 반영 검토(~20년)
 - ※ 「교원자격검정령」 개정 추진
- (교육과정 내실화) 교원 양성기관 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, 성희롱·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·배포(~'19.하)
 -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추진(~20년)
 - ※ 예비교원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 연구 추진('19.5월~)

□ 현직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재발방지교육 내실화

- (교원 성인지 교육 강화) 구체적인 사례 중심 학교급별 세분화된 초·중등 교원용 성인권 지침서를 개발·보급하고,
 - 전문 연수기관에 교원 직무교육을 위한 성인지 교육과정 개설 확대('20.상~)
 - *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성인지교육 분야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 신청·인가 추진('19.하)
- (재발방지 교육 내실화) 성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아 복귀 예정인 교원 대상 재발방지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일적인 교육 기준과 매뉴얼을 개발·보급하고 이행점검 강화('20년~)

【 시·도교육청 재발방지교육 실시 현황 】

- ▶ (개 요) 17개 시·도교육청별 성비위 징계처분 교원 대상 재발방지교육 자체 계획 수립·추진('19.3~5월)
- ▶ (연계기관) 지역 내 전문기관(성폭력상담소, 여성민우회, 여성의전화, 청소년성문화센터, YWCA 등)에 위탁하여 실시

Ⅳ. 조치 사항 및 추진 일정

□ 근절대책 이행 및 보완과제 발굴 등 현장 의견 청취 [연중]

- 현장 간담회·워크숍을 통해 시·도교육청 및 대학 업무 담당자, 교원, 학생,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·보완 과제 지속 발굴

□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정기적 이행 점검 및 과제 정비 [연중]

- (이행 점검) 사회관계장관회의, '범정부 성희롱·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' 등을 통해 이행상황 지속 점검
 - 시·도교육청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주기적 점검(분기별)
- (과제 정비) 현장 간담회,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신규 과제 및 미완료 과제를 중심으로 근절대책 보완·개선 추진(~'19.하)